통계 프리즘

우리나라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격을 얻은 체류외국인은 총 522,571명으로 집계되었음.[1)]

- 우리나라 취업자격을 얻은 체류외국인 수는 2019년 567,261명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06,669명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3년에는 522,571명으로 집계되었음.
- 2023년 우리나라 취업자격을 얻은 체류외국인의 상당수는 단순 기능 인력(450,425명, 86.2%)으로 전문 인력(72,146명, 13.8%)과 비교해 6.2배 정도 차이가 남.

○ 2023년 기준 대륙별 우리나라 취업자격을 얻은 체류외국인이 속한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전체 522,571명 중에서 95.7%(499,935명)를 차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아메리카가 2.0%(10,535명)를 차지하였음.
- 2022년과 비교해 전체 72,541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아시아에서 73,198명 증가하였으나 북아메리카에서는 657명 감소하였음.[2)]
- 정부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2023. 1.)[3)], 계절근로 근로자(E-8) 체류기간 상한 확대(2023. 5.)[4)],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정책(K-point E74, 2023. 9.)[5)] 등으로 2023년 취업자격을

1) 법무부의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507,584명이었음. 지난 5년간 숫자를 보면, 2019년 2,524,656명, 2020년 2,036,075명, 2021년 1,956,781명, 2022년 2,245,912명이었음. 2022년과 비교하면 11.7%(261,672명) 증가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524,656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2) 전문 인력 중 단기간 취업활동을 목표로 하는 단기 취업(C-4),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을 제외한 곳들에서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가 감소하였음.

3)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적극적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 특정활동(E-7),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법무부(2023. 1. 6.),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4) 법무부는 파종 · 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E-8)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하였음. 법무부(2023. 5. 30.),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5) 법무부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얻은 체류외국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우리나라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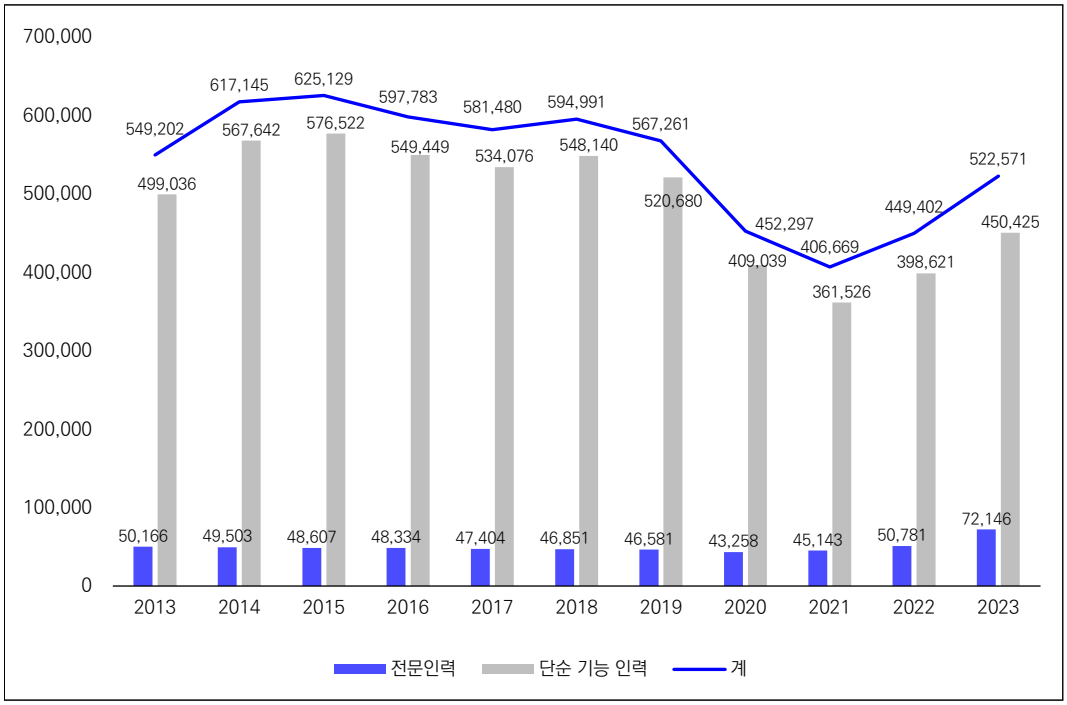

주 : 1) 체류외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외국인을 의미함.

2) 법무부가 구분한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체류자격 중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자격소지자에 해당함.

3) 체류외국인에는 합법, 불법 모두 포함됨.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 비자로 전환하도록 허용하였음. 이에 따라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들은 향후 절차에 따라 단순노무에서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단순노무(E-9 등)→숙련기능(E-7-4)→거주(F-2)→영주권(F-5)) 법무부(2023. 9. 25.),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표 1〉 대륙별 우리나라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 비교(2022년, 2023년)

(단위 : 명, %)

국 가		2022			2023			증감 (증감률)
		아시아 (비율)	북아메리카 (비율)	계 (비율)	아시아 (비율)	북아메리카 (비율)	계 (비율)	
계		426,737 (100.0)	11,192 (100.0)	437,929 (100.0)	499,935 (100.0)	10,535 (100.0)	510,470 (100.0)	72,541 (16.6)
전문 인력	소 계	29,178 (6.8)	11,192 (100.0)	40,370 (9.2)	50,322 (10.1)	10,535 (100.0)	60,857 (11.9)	20,487 (50.7)
	단기취업(C-4)	1,628 (0.4)	44 (0.4)	1,672 (0.4)	1,752 (0.4)	52 (0.5)	1,804 (0.4)	132 (7.9)
	교수(E-1)	885 (0.2)	622 (5.6)	1,507 (0.3)	828 (0.2)	609 (5.8)	1,437 (0.3)	-70 (-4.6)
	회화지도(E-2)	523 (0.1)	8,335 (74.5)	8,858 (2.0)	461 (0.1)	7,647 (72.6)	8,108 (1.6)	-750 (-8.5)
	연구(E-3)	3,416 (0.8)	88 (0.8)	3,504 (0.8)	3,323 (0.7)	83 (0.8)	3,406 (0.7)	-98 (-2.8)
	기술지도(E-4)	47 (0.0)	80 (0.7)	127 (0.0)	45 (0.0)	69 (0.7)	114 (0.0)	-13 (-10.2)
	전문직업(E-5)	65 (0.0)	32 (0.3)	97 (0.0)	60 (0.0)	30 (0.3)	90 (0.0)	-7 (-7.2)
	예술흥행(E-6)	2,454 (0.6)	255 (2.3)	2,709 (0.6)	2,945 (0.6)	311 (3.0)	3,256 (0.6)	547 (20.2)
	특정활동(E-7)	20,160 (4.7)	1,736 (15.5)	21,896 (5.0)	40,908 (8.2)	1,734 (16.5)	42,642 (8.4)	20,746 (94.7)
단순 기능 인력	소 계	397,559 (93.2)	0 (0.0)	397,559 (90.8)	449,613 (89.9)	0 (0.0)	449,613 (88.1)	52,054 (13.1)
	계절근로(E-8)	4,767 (1.1)	0 (0.0)	4,767 (1.1)	14,143 (2.8)	0 (0.0)	14,143 (2.8)	9,376 (196.7)
	비전문취업(E-9)	268,314 (62.9)	0 (0.0)	268,314 (61.3)	310,734 (62.2)	0 (0.0)	310,734 (60.9)	42,420 (15.8)
	선원취업(E-10)	19,874 (4.7)	0 (0.0)	19,874 (4.5)	21,476 (4.3)	0 (0.0)	21,476 (4.2)	1,602 (8.1)
	방문취업(H-2)	104,604 (24.5)	0 (0.0)	104,604 (23.9)	103,260 (20.7)	0 (0.0)	103,260 (20.2)	-1,344 (-1.3)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23년 기준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취업자격을 얻은 체류외국인 수는 71.4%(373,054명)를 차지하였음.

- 나라별로 보면, 2023년 우리나라 취업자격을 얻은 체류외국인 수 전체 522,571명 중 중국 19.4%(한국계 중국인 포함, 101,568명), 베트남 12.0%(62,605명), 네팔 10.0%(52,017명) 순으로 나타났음.
-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 증가한 73,169명 중 주요 아시아 나라에서 54,314명이 증가하였고, 베트남 14,919명, 네팔 12,465명, 인도네시아 10,322명 순으로 증가하였음.
- 2023년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증가된 인원 54,314명 중 대부분 단순 기능 인력(41,126명)에서 증가하였음.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타지키스탄 소수업종 특화국가 추가 지정(2023. 12.)[6]과 같은 외국인 고용정책 활성화 노력으로 더욱 많은 아시아 국가의 단순 기능 인력 근로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의 '소수업종 특화국가 지정(2023. 12.)[7]'과 같이 주로 아시아 지역의 근로자들을 단순 기능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짧은 기간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나, 내국인의 인종주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면적으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8]

6) 고용노동부는 호텔 · 콘도업에 대해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추가적으로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음. 고용노동부(2023. 12. 29.), 「호텔 · 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7) 고용노동부는 2004년 8월부터 업종별 특성과 사업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지역) 출신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있음. 건설업 :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어업 :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농축산업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중국. 서비스업 :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고용노동부(2019), 「19년 알기쉬운 고용허가제」.

8) 윤자호(202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표 2〉 2022년 국가별 우리나라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

(단위 : 명, %)

국 가		2022							
		중국 (비율)	베트남 (비율)	캄보디아 (비율)	네팔 (비율)	인도네시아 (비율)	필리핀 (비율)	미얀마 (비율)	계 (비율)
계		101,599 (100.0)	47,686 (100.0)	39,734 (100.0)	39,552 (100.0)	37,546 (100.0)	27,203 (100.0)	25,420 (100.0)	318,740 (100.0)
전문 인력	소 계	8,774 (8.6)	5,008 (10.5)	327 (0.8)	1,546 (3.9)	653 (1.7)	2,452 (9.0)	227 (0.9)	18,987 (6.0)
	단기취업(C-4)	609 (0.6)	228 (0.5)	29 (0.1)	34 (0.1)	11 (0.0)	208 (0.8)	2 (0.0)	1,121 (0.4)
	교수(E-1)	150 (0.1)	39 (0.1)	1 (0.0)	26 (0.1)	20 (0.1)	57 (0.2)	2 (0.0)	295 (0.1)
	회화지도(E-2)	371 (0.4)	6 (0.0)	0 (0.0)	0 (0.0)	1 (0.0)	1 (0.0)	0 (0.0)	379 (0.1)
	연구(E-3)	331 (0.3)	387 (0.8)	13 (0.0)	99 (0.3)	56 (0.1)	57 (0.2)	22 (0.1)	965 (0.3)
	기술지도(E-4)	0 (0.0)	0 (0.0)	0 (0.0)	0 (0.0)	4 (0.0)	4 (0.0)	0 (0.0)	8 (0.0)
	전문직업(E-5)	0 (0.0)	0 (0.0)	0 (0.0)	0 (0.0)	2 (0.0)	3 (0.0)	0 (0.0)	5 (0.0)
	예술흥행(E-6)	142 (0.1)	21 (0.0)	0 (0.0)	0 (0.0)	31 (0.1)	1,615 (5.9)	2 (0.0)	1,811 (0.6)
	특정활동(E-7)	7,171 (7.1)	4,327 (9.1)	284 (0.7)	1,387 (3.5)	528 (1.4)	507 (1.9)	199 (0.8)	14,403 (4.5)
단순 기능 인력	소 계	92,825 (91.4)	42,678 (89.5)	39,407 (99.2)	38,006 (96.1)	36,893 (98.3)	24,751 (91.0)	25,193 (99.1)	299,753 (94.0)
	계절근로(E-8)	33 (0.0)	1,882 (3.9)	139 (0.3)	592 (1.5)	0 (0.0)	1,493 (5.5)	0 (0.0)	4,139 (1.3)
	비전문취업(E-9)	2,054 (2.0)	31,607 (66.3)	39,268 (98.8)	37,414 (94.6)	28,882 (76.9)	23,222 (85.4)	24,267 (95.5)	186,714 (58.6)
	선원취업(E-10)	1,693 (1.7)	9,189 (19.3)	0 (0.0)	0 (0.0)	8,011 (21.3)	36 (0.1)	926 (3.6)	19,855 (6.2)
	방문취업(H-2)	89,045 (87.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9,045 (27.9)

주 : 중국 근로자 수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표 3〉 2023년 국가별 우리나라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

(단위 : 명, %)

국 가		2023							
		중국 (비율)	베트남 (비율)	캄보디아 (비율)	네팔 (비율)	인도네시아 (비율)	필리핀 (비율)	미얀마 (비율)	계 (비율)
계		101,568 (100.0)	62,605 (100.0)	47,003 (100.0)	52,017 (100.0)	47,868 (100.0)	31,672 (100.0)	30,321 (100.0)	373,054 (100.0)
전문 인력	소 계	10,054 (9.9)	8,792 (14.0)	1,472 (3.1)	4,914 (9.4)	2,305 (4.8)	3,376 (10.7)	1,262 (4.2)	32,175 (8.6)
	단기취업(C-4)	581 (0.6)	348 (0.6)	118 (0.3)	31 (0.1)	9 (0.0)	144 (0.5)	2 (0.0)	1,233 (0.3)
	교수(E-1)	143 (0.1)	34 (0.1)	1 (0.0)	16 (0.0)	15 (0.0)	54 (0.2)	1 (0.0)	264 (0.1)
	회화지도(E-2)	318 (0.3)	4 (0.0)	0 (0.0)	0 (0.0)	1 (0.0)	1 (0.0)	0 (0.0)	324 (0.1)
	연구(E-3)	334 (0.3)	352 (0.6)	12 (0.0)	108 (0.2)	68 (0.1)	50 (0.2)	17 (0.1)	941 (0.3)
	기술지도(E-4)	0 (0.0)	0 (0.0)	0 (0.0)	0 (0.0)	4 (0.0)	5 (0.0)	0 (0.0)	9 (0.0)
	전문직업(E-5)	0 (0.0)	0 (0.0)	0 (0.0)	0 (0.0)	2 (0.0)	3 (0.0)	0 (0.0)	5 (0.0)
	예술흥행(E-6)	159 (0.2)	22 (0.0)	0 (0.0)	0 (0.0)	40 (0.0)	1,875 (5.9)	4 (0.0)	2,100 (0.6)
	특정활동(E-7)	8,519 (8.4)	8,032 (12.8)	1,341 (2.9)	4,759 (9.1)	2,166 (4.5)	1,244 (3.9)	1,238 (4.1)	27,299 (7.3)
단순 기능 인력	소 계	91,514 (90.1)	53,813 (86.0)	45,531 (96.9)	47,103 (90.6)	45,563 (95.2)	28,296 (89.3)	29,059 (95.8)	340,879 (91.4)
	계절근로(E-8)	64 (0.1)	7,548 (12.1)	685 (1.5)	587 (1.1)	50 (0.1)	3,353 (10.6)	5 (0.0)	12,292 (3.3)
	비전문취업(E-9)	2,071 (2.0)	36,736 (58.7)	44,846 (95.4)	46,516 (89.4)	36,053 (75.3)	24,904 (78.6)	28,043 (92.5)	219,169 (58.7)
	선원취업(E-10)	1,418 (1.4)	9,529 (15.2)	0 (0.0)	0 (0.0)	9,460 (19.8)	39 (0.1)	1,011 (3.3)	21,457 (5.8)
	방문취업(H-2)	87,961 (86.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7,961 (23.6)

주 : 중국 근로자 수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표 4〉 국가별 우리나라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 비교(2022년, 2023년)

(단위 : 명, %)

국 가		체류자 수 증감(증감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계
계		-31 (0.0)	14,919 (31.3)	7,269 (18.3)	12,465 (31.5)	10,322 (27.5)	4,469 (16.4)	4,901 (19.3)	54,314 (17.0)
전문 인력	소 계	1,280 (14.6)	3,784 (75.6)	1,145 (350.2)	3,368 (217.9)	1,652 (253.0)	924 (37.7)	1,035 (455.9)	13,188 (69.5)
	단기취업(C-4)	-28 (-4.6)	120 (52.6)	89 (306.9)	-3 (-8.8)	-2 (-18.2)	-64 (-30.8)	0 (0.0)	112 (10.0)
	교수(E-1)	-7 (-4.7)	-5 (-12.8)	0 (0.0)	-10 (-38.5)	-5 (-25.0)	-3 (-5.3)	-1 (-50.0)	-31 (-10.5)
	회화지도(E-2)	-53 (-14.3)	-2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55 (-14.5)
	연구(E-3)	3 (0.9)	-35 (-9.0)	-1 (-7.7)	9 (9.1)	12 (21.4)	-7 (-12.3)	-5 (-22.7)	-24 (-2.5)
	기술지도(E-4)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1 (12.5)
	전문직업(E-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예술흥행(E-6)	17 (12.0)	1 (4.8)	0 (0.0)	0 (0.0)	9 (29.0)	260 (16.1)	2 (100.0)	289 (16.0)
	특정활동(E-7)	1,348 (18.8)	3,705 (85.6)	1,057 (372.2)	3,372 (243.1)	1,638 (310.2)	737 (145.4)	1,039 (522.1)	12,896 (89.5)
단순 기능 인력	소 계	-1,311 (-1.4)	11,135 (26.1)	6,124 (15.5)	9,097 (23.9)	8,670 (23.5)	3,545 (14.3)	3,866 (15.3)	41,126 (13.7)
	계절근로(E-8)	31 (93.9)	5,666 (301.1)	546 (392.8)	-5 (-0.8)	50 (0.0)	1,860 (124.6)	5 (0.0)	8,153 (197.0)
	비전문취업(E-9)	17 (0.8)	5,129 (16.2)	5,578 (14.2)	9,102 (24.3)	7,171 (24.8)	1,682 (7.2)	3,776 (15.6)	32,455 (17.4)
	선원취업(E-10)	-275 (-16.2)	340 (3.7)	0 (0.0)	0 (0.0)	1,449 (18.1)	3 (8.3)	85 (9.2)	1,602 (8.1)
	방문취업(H-2)	-1,084 (-1.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84 (-1.2)

주 : 중국 근로자 수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23년 기준 가장 많이 증가한 단순 기능 인력 체류 외국인 수의 42.3%가 수도권(경기,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2022년(44.4%)과 비교하여 2.1%p 낮아졌음.

– 2022년과 비교하여 수도권(경기, 서울) 지역 외국인 수 비율은 2.1%p 감소하였으나, 인원

은 13,343명 증가하였음.

- 수도권 이외에도 2022년과 비교하여 경남(9,386명), 충남(6,727명), 전남(6,185명) 순으로 증가하였음.
- 향후 늘어나는 외국인 수에 따른 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어 외국인 차별을 개선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KLI

〈표 5〉 2022년 우리나라 지역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

(단위 : 명, %)

지 역		2022					
		경기 (비율)	경남 (비율)	서울 (비율)	충남 (비율)	경북 (비율)	전남 (비율)
단순 기능 인력	소 계	144,796 (100.0)	35,066 (100.0)	32,224 (100.0)	30,605 (100.0)	22,864 (100.0)	20,696 (100.0)
	계절근로(E-8)	50 (0.0)	326 (0.9)	0 (0.0)	527 (1.7)	498 (2.2)	794 (3.8)
	비전문취업(E-9)	96,799 (66.9)	29,419 (83.9)	2,716 (8.4)	22,162 (72.4)	17,233 (75.4)	15,835 (76.5)
	선원취업(E-10)	19 (0.0)	3,305 (9.4)	2 (0.0)	1,668 (5.5)	3,174 (13.9)	3,477 (16.8)
	방문취업(H-2)	47,928 (33.1)	2,016 (5.7)	29,506 (91.6)	6,248 (20.4)	1,959 (8.6)	590 (2.9)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표 6〉 2023년 우리나라 지역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

(단위 : 명, %)

지 역		2023					
		경기 (비율)	경남 (비율)	서울 (비율)	충남 (비율)	경북 (비율)	전남 (비율)
단순 기능 인력	소 계	158,692 (100.0)	44,452 (100.0)	31,671 (100.0)	37,332 (100.0)	27,386 (100.0)	26,881 (100.0)
	계절근로(E-8)	205 (0.1)	1,873 (4.2)	0 (0.0)	2,229 (6.0)	1,890 (6.9)	3,019 (11.2)
	비전문취업(E-9)	111,092 (70.0)	37,007 (83.3)	2,928 (9.2)	27,021 (72.4)	20,333 (74.2)	19,544 (72.7)
	선원취업(E-10)	15 (0.0)	3,504 (7.9)	3 (0.0)	1,913 (5.1)	3,284 (12.0)	3,762 (14.0)
	방문취업(H-2)	47,380 (29.9)	2,068 (4.7)	28,740 (90.7)	6,169 (16.5)	1,879 (6.9)	556 (2.1)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표 7〉 우리나라 지역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 비교(2022년, 2023년)

(단위 : 명, %)

지 역		지역별 체류자 수 증감(증감률)					
		경기	경남	서울	충남	경북	전남
단순 기능 인력	소 계	13,896 (9.6)	9,386 (26.8)	-553 (-1.7)	6,727 (22.0)	4,522 (19.8)	6,185 (29.9)
	계절근로(E-8)	155 (310.0)	1,547 (474.5)	0 (0.0)	1,702 (323.0)	1,392 (279.5)	2,225 (280.2)
	비전문취업(E-9)	14,293 (14.8)	7,588 (25.8)	212 (7.8)	4,859 (21.9)	3,100 (18.0)	3,709 (23.4)
	선원취업(E-10)	-4 (-21.1)	199 (6.0)	1 (50.0)	245 (14.7)	110 (3.5)	285 (8.2)
	방문취업(H-2)	-548 (-1.1)	52 (2.6)	-766 (-2.6)	-79 (-1.3)	-80 (-4.1)	-34 (-5.8)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표 8〉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전문 인력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 · 패션 모델, 강의 ·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 · 유지 ·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 · 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 수확(재배 ·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 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 사회과학 · 인문학 · 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 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 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표 8〉의 계속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전문 인력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 ·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
단순 기능 인력	계절근로(E-8)	농작물 재배 · 수확 ·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선원취업(E-10)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 제1호 · 제2호 · 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 · 업무연락 · 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서비스업분류는 제외)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표 8〉의 계속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단순 기능 인력	방문취업(H-2)	(2) 축산업(012)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연근해 어업(03112) (5) 양식 어업(0321) (6) 금속 광업(06) (7)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8)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9) 제조업(10~3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10) 건설업(41~42) (발전소 · 제철소 ·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 · 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 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한다. (1) 수도업(36) (2)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 (5) 수상 운송업(50) (6) 항공 운송업(51) (7)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냉장 · 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②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8)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9) 우편 및 통신업(61) (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11) 정보서비스업(63) (12) 금융업(64) (13) 보험 및 연금업(65) (1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15) 부동산업(68) (16) 연구개발업(70) (17) 전문 서비스업(71) (1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19)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표 8〉의 계속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단순 기능 인력	방문취업(H-2)	(20)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22) 교육 서비스업(85) (23) 국제 및 외국기관(99)

자료 : 법제처,「외국인근로자 고용 · 취업」.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